

제39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월4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6)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2)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2)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3)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4)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9)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1)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0)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65)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61)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2)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6)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99)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4)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7)
1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93)
1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6)
1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7)
1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87)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5)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87)
2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5)
2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47)
24.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300)
2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08089)
2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11958)
27.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100059)
28.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792)
29.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568)
30.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13383)
3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4140)

32.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496)
33.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045)
3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325)
35.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159)
3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419)
37.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438)
3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627)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188)
40.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318)
4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416)
42.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722)

상정된 안건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 3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2) 3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2) 5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3) 5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4) 8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9) 8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1) 9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0) 9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5) 16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1) 16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2) 20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 22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9) 22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 22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7) 22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 ... 41
1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 ... 41
1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7) ... 41
1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7) ... 41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바쁘신 일

정 중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전보된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전체회의에서 최초로 인사하는 것이 관례이나 법안소위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먼저 소위원회에서 인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전보 후 바로 소위원회 준비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널리 해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대표해서 고규창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 시작과 함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2)
(10시07분)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검토사항은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들이 열거되어 있는 민주화운동정의 조항에 추가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날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논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인천5·3민주항쟁과 다른 민주화운동들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 참가 인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법률에 열거할지 여부, 국가기념일로 지정할지 여부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5페이지에 정부 제출 자료를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대상 운동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3민주항쟁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꼭 병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여러 형평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법률안에 반영시키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행정안전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대한다 이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일단 다른 것하고 달라서 민주항쟁 관련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기념사업회법에 포함시키는 것과 또 나중에 국가 지정 기념일로 하는 것과 그 나름의 판단하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민주화운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많은 논의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천5·3민주항쟁은 80년대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고 또 4·19혁명, 6·10항쟁과 연계된 민주화운동 사례들이 열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

께서 논의해 주시면 행안부는 그것에 따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논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맞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왜 행안부에서 이것을 지금 수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러 민주화운동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인천5·3 사건에 대한 것만 거기다 병기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명수 위원 하여튼 뭔가 내부적으로…… 이게 민주 내지는 민주화라는 개념 정의도 포괄적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법률로 넣어서 기념사업에 하고 정부기념일로 할 거냐에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딱 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름의 범위에 대한 설정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도 관련된 기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김민철 위원 더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이 언제 된다고 보세요, 차관님? 여기에 지금 들어가도 별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들어가면 특별히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문제점만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민주화운동들도 같이 거기에 병행을 요구할 경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준이라는 것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렇게 한 것이 기준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면 어떻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민철 위원 이것 이 앞에 한번 논의도 했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른 민주화운동도 올라오면 그때 이렇게 논의를 한 번 두 번 더 해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여기에 같이 넣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우리가 죽 내려 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어느 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고 어느 시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저항에 대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먼저 뽑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 부분 민주화운동에 관한 것들은 정리가 돼 있고요. 시행령에 정리는 돼 있는데 다만 거기에 있는 사건 중에 법률 2조에 이렇게 예시적으로 나열해 놓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등 안에 들어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건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위의 법에다가 병렬로 명기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운동들이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더 하시면 어떻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크게 무슨 저기한 것은 없고요.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가지고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개념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2항으로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두 번째는 윤재옥 의원 안입니다.

2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안부장관 또는 광역단체장이 승인한 법인들도 경비 등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사업회 설립 이전 단체들이 사업회가 만들어질 때 정리가 되었고 또 기타 유사한 단체들은 민주화 보상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입장.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들,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한 법인데 이 기념사업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념사업회 이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은 입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련 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각각의 개별법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다가 타 민주화운동 법인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체계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차관님, 기념사업회 말고 설립된 법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각각의 민주화운동 관련된 법인들이 다 있습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등등이 있고요.

○이명수 위원 지금 이것은 기념사업회가 아니고 ‘기념사업회 또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기념사업회 또는’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념사업회 말고 또는 설립된 법인인데 행안부장관……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포괄적인 지원은 가능한데요, 개개의 법인에 대해서 뭐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민주화기념사업회처럼 별도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의 지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기념사업회 말고 지금 행안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승인한 법인이 뭐가 있느냐고요, 대표적인 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 같은 경우는 지

방별로 4·19와 관련된 운동단체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유재산에 대한 무료 사용이라든가 예산상의 지원 같은 것들을 담아 놔는데요. 그런 것 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다가 담아 달라는 것이 의원님 발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수 위원 법체계가 안 맞는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명수 위원 그리고 지원 필요성은 가능한데 이걸 이 법 14조에다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기념사업회법에다가 넣는 것은 체계가 안 맞는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입장도 기념사업회법에다가 담아 놓은 민주화운동 관련된 법인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 논리라면 기념사업회에다가 경비 보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되지요. 그것도 이 법에 하지 말고 그 법에다가 해야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것만 여기에 담아 놔는데 그것 이외에 여러 민주화 법인들을 포괄해서 국공유재산을 무상 배부받는다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담아 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2)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3)

(10시21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사항별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자료 3쪽입니다.

먼저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 확대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현행법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서 위로금 지급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의 유족도 유족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이명수 의원안은 강제동원 희생자·생환자, 미수금피해자에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도 포함을 하고 그 유족도 유족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희생자 유족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언급들이 있으셨고요. 정부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비용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부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와 주십사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해서 일본에서 받아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수행한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으셨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희생자의 범위와 지원 확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돼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께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때 남북한을 합쳐서 65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강제동원돼서 희생되셨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45년 해방 당시에 한반도 인구가 한 2500만 명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그러는 자료도 있고요. 2000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의 한반도 국민들이 계셨는데 그중에 650만 명이 강제동원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경제활동인구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데, 희생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행정안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국외강제동원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배경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제가 자꾸 발언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차관님 답변은 지난번 답변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청구권 협정 한번 직접 보셨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의 일정한 그런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그것으로 정리를 하되 나중에 추후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 있어요. 자꾸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위로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안 준다는 논리는 안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강제동원되어서 사망한 분들만 위로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사망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때 강제동원 현장에 직접 갔다가 살아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작고하시고 많이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역사의 아픔을, 개인적인 그런 것 없이 한 것을 지금 정부가 안 해 주면 누가 하느냐. 이것을 인식하게 자꾸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역사의 피해자예요, 이분들은. 아무런 개인적인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아예 시작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 뒤의 정부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 왔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한 것은 종전의 얘기와 똑같은 거고 한일청구권협정과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 용역 조사 한번 봤습니까? 추가 용역 조사한 보고서를 봤어요? 거기에 이것을 쥐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과 금액과 인원이 얼마인가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차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나라, 훌륭한 국가는 정말 국민 한 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좋은 국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차관께서 숫자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새해 벽두부터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는 참 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오히려 국회보다 더 앞장서서 그 신원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또 보상·배상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또 다른 위원님.

차관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보면 65년에 체결된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태평양전쟁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이렇게 돼 있던 부분에서 국외를 빼고 강제동원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법안이 이명수 의원님 안이고, 그 밑에 정의에 나오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이 부분을 강제동원 희생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 조문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대상자의 범위와 그게 좀 확대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는데 당장이 법안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데 이게 특정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과 또 외교적인 문제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하다 보면 당장 법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차관님 말씀한 것은 행안부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기는 어려워요. 실무적인 것은 이 법 통과하면서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가동시키면 돼요.

용역보고서 안 보셨지요? 직접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마 실무적으로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될 분, 보상이라는 표현 속에 위로금이 다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그 범위, 액수도 1조 원 안 나와요. 몇천억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 이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증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 정부에서 털고 가서 오히려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의원이 됐다, 특정한 정당에서 관심을 갖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야가 없어요. 역사적인 문제를 언제까지…… 지금 이 답변을 수년 동안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행안부는. 그래서 이번에 결론을 내려야 되고.

지금 차관님 걱정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접수를 받고,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하고 청구권 협정 다시 한번 직접 보세요.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결단을 내려서 해야지 언제까지 보류하고 벌써 몇 번째 이것을 반복하는데 저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한일 관계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루에 상당한 분의 강제동원자가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정부가 치유해 줄 필요가……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꼭 좀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 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시고 참 많은 분들이 억울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국가 전체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사실로는 언젠가는 정부가 책임을 져 줘야 될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피해가, 지금 살아 계신 분만 한다면 이리하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내에서도 강제노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전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남북한 입장도 공동으로 아마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쯤은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소위가 열릴 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적당한 금액 또는 지금 남아 계신 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둬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 드는지도 아무도 잘 모르고 또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서로 입장이 애매한데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위원회 할 때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거푸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명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음에 이 법안 심사할 때는 꼭 좀 해 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보고서 안 봤고 청구권 협정도 제대로 안 읽어 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깐.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법안 심사하면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꼭 읽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행안부도 검토를 하고요. 전문가, 연구하신 분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열어 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소위에서 한번 날 잡아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이명수 위원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 전체가.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행안부가 좀 준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재호 말씀하십시오.

○이명수 위원 참고로 지금 일본이 군함도 말고 추가로 유네스코 지정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제동원 지원재단 있잖아요. 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한번 파악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것도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법률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 입장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차관님, 용산역 앞에 보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서울시하고 자리다툼 때문에 실제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가지고…… 아마 허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소녀상처럼 외교 문제 비슷하게 지금 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안부 입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존치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도 다음번까지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김형동 위원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고 좀 전에 관련 법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급작스럽게 여쭙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강제노동, 징역, 징용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먼저 앞장서지 못할 망정 민간이 해 놓은 것마저도 해체를 시키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014)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249)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911)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0)

(10시37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난번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 규정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조례로 위임하자는 의견, 지방공기업 외에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자치법 외에 지방의회법을 신설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서는 단체장 임명권 존중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전문위원님 의견이 신중 검토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없고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그러면 검토의견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정안과 같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다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청문 제도 도입 시 기관장 임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과 공운법상에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정무직 부단체장과 제주도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후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조직권 등에

대한 제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상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용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기타 다른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 절차는 우리나라 인사법, 지방공무원법상에 따른 인사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치법상에 청문 대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또 법체계상으로도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이나 여타 지방 관련 공공기업에 대해서 또 재단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직 직원에 대한 인사청문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행안부 의견대로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을 하자 이렇게 가 버리면 지방공기업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광역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여성재단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장을 도와서 선거를 치렀던 인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전문성 그리고 또 고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확보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것을 조례로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해서 통일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공기업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청문 제도를 규정해 줌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통일성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들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차관님, 지금 정무직 부단체장은 부시장·부지사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청문회 도입이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보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법안에는 정무직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또……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부단체장의 경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부단체장, 일반직……

○이명수 위원 그러면 일반 자치단체의 공사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 이분들은 정무직 부단체장보다 더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대체로? 정무직 부단체장이 단체장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공사 사장이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부단체장 청문회를 할 수 있는…… 형평성으로 봐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사권을 권한으로만 보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권은 한편 의무입니다.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양쪽 측면이 있어요. 유권자가 볼 때는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청문회 하는 것이 마치 이것을 제약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아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을 조례로 뒀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를 거쳐야 할 대상, 그런 필요 대상들을 우리가 열거해서 그것은 꼭 거치도록 하고 부단체장이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 부단체장에 관한 논란이나 문의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데 부단체장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좋은 분들을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선택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특별하게 재단

이라든가, 직접 출연하는 재단의 책임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은 선택적으로 뒤도 되는데 일단 부단체장이나 공기업의 사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두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청문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청문회 결과에 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는 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이하에 관해서는 인사제도상에 임용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고 잘되어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도 있고 임명 절차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쪽의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청문까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단체장이 기속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부단체장도 정무직 부단체장만 할 것인지 일반직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다르게 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지방자치법에 획일적으로 담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좀 조사해 보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반대고요. 또 여러 가지 청문제도의 정착이라든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지방공기업 공사·공단의 사장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수단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상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공기업법상에 담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은 임명할 때 청문회 거치면서 정무직 부단체장은 안 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냐고요, 실질적으로. 때로는 단체장을 대신해서 정무 부단체장이 공기업이나 여기에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받고 지시를 받는 공기업 사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냐고요. 저는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지금 일반직 가는 행정부시장·부지사하고 정무직하고는 또 달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청문회 대상은 독립된 기관의 장들에 대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부단체장

을 청문한다는 것은 이미 선출직 단체장으로 임명된 기관장 밑의 하부 기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문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법에다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권한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의무라니까요, 때로는.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거든요. 보다 좋은 분들이 부단체장을 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려면 이런 청문회…… 지금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청문회 거치는 거하고 안 거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청문할 것인지 여부와 청문에 대한 기속 여부, 청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와 협약이나 협조를 통해서 서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청문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이명수 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자치단체별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랑 협의해서.

○이명수 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청문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부단체장 청문회를 한다는 얘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제주도만 지금 부단체장에 대해서 청문을 하고 있고요.

○이명수 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라서 하는 거고, 거기하고는 좀 다르지요. 다른 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 맡기면 안 하지요. 그거 하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하부 기관에 대한 청문이 가능한 건지 또……

○이명수 위원 그것을 자꾸 법 논리만 보지 말고 현실로 봐요, 현실로. 부단체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런 정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청문회 거친다고, 거기서 부결적인 그런 의견을 내도. 그런데 거치는

거하고 안 거치는 거하고 다르다. 누구나 정무 부단체장이 돼서는 안 돼요. 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치는 게 보다 좋은 사람을 등용하는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현실로 보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차관께서 입법이 과하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글썽요, 이게 정확히 입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두면 된다, 굳이 지방자치법에 둘 필요없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대상인 지방공기업 하면 통과됐을 때 인청을 거쳐야 되는 대상 기관이 몇 곳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공사·공단입니다. 156개 기관장입니다.

○김형동 위원 전국에 156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말고 중앙관할받는 공기업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공사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전부 다 포괄이 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재단, 문화재단……

○김형동 위원 그러니까 지방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 LH 이런 사장들에 대해서, 임원들에 대해서 인청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거는 국가공기업이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기업 장은.

○김형동 위원 제가 여쭙보는 게 의문스러워서…… 지방공기업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중앙에 더 큰 그리고 더 실력이 있는,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국가공기업은 청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여러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청문의 대상으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지방공기업의 장들에 대해서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것

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감이고요. 국가공기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야기가 자꾸 중언부언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속하지 않는 공사·공단인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단,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데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을 보내면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그런데 문제는 재단이나 이런 쪽은 사각지대가 돼 있어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도왔던 그리고 그 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검증해 주는 게 그 자치단체에 소속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지방공기업으로만 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을 정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근거만 행안부에서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조금 더 폭을 넓히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청문이나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권위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 주면 추후에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서도 다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결국에는 자치법에서 공기업의 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치법에도 근거를 두시는 것이 이게 법체계상 맞는지를 저희가…… 별도 법이 있는데……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큰 틀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법에 두고 개별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하나는 게 아니라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수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자치법에 하는 것은 자치법이 지방자치의 모범이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두는 것이지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저기다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입법 방법론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인사권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이 필요한지, 긴급한지는 조금 정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서 청문제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다 열어 놓고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지도 행안부 입장에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지방에서는 당연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 검토를 해 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어떠신가 판단이 되고요.

우선 동의가 된 부분은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도의 의견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정부의 대안을 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일단 세 분의 법안이 청문회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일단 청문회는 도입하고 그것을 개별법으로 공기업법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그것은 별개 방법론의 문제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현안 관련해서 1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LH 사태 있고 나서 공기업의 회계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재산 현황 등록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게 기존하고 바뀐 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재산 등록해야 되는지 현황이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처에서 그 범위를 정했고요.

○김형동 위원 차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의원실에도 몇 기관들이 다녀갔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또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직책만 보고 등록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각 기관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서툴러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재산 등록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효율을 낳거나 특히 임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0쪽입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지난번 소위에서는 다음 12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미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 중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교섭단체를 둘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도입하는 것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회 의사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검토, 지방의회는 그 규모와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실익 또 교섭 상대 없는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지방의회 자율의 영역이 아닌 법률로 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의견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내용을 자치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최소 7명에서부터 많게는 142명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치법에다가 확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되고요.

지방의회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율적인 영역으로 또 지방정치의 영역으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대체로 그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그러면 현재 지방의회에서 다 교섭단체를 도입·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기초 같은 경우는 의원님 수가 워낙 적어서……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역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광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 거기에 직원들을 다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잖아요? 파견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 뭘지 모르겠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원근무.

○최춘식 위원 지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합법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문제하고 이 법안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요.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직원도 운영하고 다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가 거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그러면 지금 교섭단체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비공식적인 파견근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방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처 직원의 범위를 정해 뒀고요. 그 직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처를 관장하는 지방의회 의장님과 또 여러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서 그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차관님, 그러면 교섭단체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의회사무처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보니까 운영위원회 소속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의회사무처 내의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일부 지원근무를 하겠지요.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섭단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으로 바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직원의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교섭단체 이런 것들은 법정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거기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불법이나 아니냐 이것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요, 의회활동을. 저희가 보기에는 큰 쟁점은 아닌 것으로……

○**최춘식 위원** 소속이 교섭단체로 명시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인원이 가서 근무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교섭단체를 구성해 주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 그 맥락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나는 잘 몰라서 여쭙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께서서는 교섭단체에 관한 부분을 자치법에 명시함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말씀이지요?

○**최춘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거기를 지원하는 인력에 관한

문제는 이 법에 담은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지방의회 사무처의 지원 인력을 의회의 규모에 따라서 몇 명으로 해 주느냐 그것을 정하게 되면, 의회사무처 내에서 의장님과 각각의 상임위와 협의해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지 교섭단체를 자치법에 명시한다라고 그래서 그 직원이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배치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최춘식 위원** 그것 참 애매하네요. 지금 각 17개 시도에, 시도로 우선 국한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7개 시도의 의원정수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많은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 142명까지 돼 있고 또 적은 데는 18명 이렇게까지도 내려가 있어요. 이것을 놓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따져 가지고 각각의 자치단체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해외의 예를 들어도 어떤 나라는 3명만 있으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도록 된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을 꼭 다 따르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각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중앙, 국회에서 법으로 교섭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규정해 주는 것이……

○**최춘식 위원** 좀 과하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또 여러 지방의회마다 구성과 특성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 정해 주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보고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차관님,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 시도의회 교섭단체에 인력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의회사무처 내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명수 위원** 지원을 하는데 실제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혹시 그것 이외의 지원 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렇지요, 파악하고 가야지요.

교섭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차피 의회 구성원들의 정당,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국회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교섭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경기나 이렇게 큰……

○**이명수 위원** 그렇다면 자꾸 형식 논리 가지고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이렇게 나가자 말고, 예를 들면 최춘식 의원안에 지금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 구성·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지요. 교섭단체가 중요하고 실제 제가 들은 바로는 교섭단체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나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형식 논리로만 보지 말고 일단은 자치단체에서도 교섭단체를 의회에서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런 정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훼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하고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입법 논리상.

의무사항으로 하지 말고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정도는 자치법에서 할 수 있지요. 교섭단체가 중요하고 실제 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해요. 그것을 형식 논리만 보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열두 분부터 또 네 분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한다 이렇게 워낙 다양하게 돼 있어

서 교섭단체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자치법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정도의 안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방의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되는데 기초가 좀 어렵고 해서 말씀인데……

○**소위원장 박재호**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찾아봤던 사항인데 경기도의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18년도 7월 11일 날 위원 판결이 난 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공무원이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배치돼서 정당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어떠냐 하는 것을 판결 받아 본 것인데 이런 겁니다.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정치활동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직원을 거기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게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내의 지원이라면 그것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범위에 들어갈 텐데요. 만약에 도를 넘어서 교섭단체, 특정 정당의 업무인데 지방의회의 업무 소관을 벗어나서 당에 관한 어떤 업무를 지원했다 그러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것이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해 연구하는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결국 교섭단체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 배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방자치법상에 교섭단체에 관한 근거를 둔다 하더라도 교섭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것과 교섭단체로서 그 선을 넘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나 사법부 쪽 판단은 좀 엄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춘식 위원**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직원이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지방의회의 운

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안전이나 예산 심의나 이런 등등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교섭단체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그게 당 차원의 업무, 정당 차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위의……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마지막.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자료 13쪽입니다.

기타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들이 없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이 안들이 전부 다 기반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이명수 위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완료된 거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5)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1)

(11시14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정호 의원안과 박완주 의원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하향하는 대신에 인구 기준을 아예 삭제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이 50만 이상의 도시로 완화된다면 최대 13개 지자체에서 지방연구원을 신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할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반대로 기존의 도 지방연구원과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대도시 지방연구원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동일 생활권 내에 다수의 지방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인접한 시도와의 정책 연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다수의 지방연구원이 일시에 신규 설립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요. 특히 자치분권법에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들도 근거법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일용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일단 지금 인구 50만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이것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것을 법률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연구원 말고도 R&D가 중요한 시기에 적어도 인구 50만 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어떤 중장기 과제를 논의해 보는 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명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존의 연구원도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아요, 저도 지방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연구원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잖아요, 행정에 반영하고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소위 단체장 산하, 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남용이나 남발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를 하고 있지요? 연구원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진흥원·개발원·교육원 많은 그런, 사실상 행정기관의 인력과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것 통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제도와 컨설팅, 지도 권한이 있고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평가 지침들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이명수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을 평가해서 기관의 존폐나 이런 것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폐지된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반영합니다. 경영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한 경우에는 폐지 같은 것을 검토 권고하고 있고요.

○이명수 위원 실제 폐지한 게 있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실제 폐지도 공사·공단의 일부는 했습니다.

○이명수 위원 거의 없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거의 없지만……

○이명수 위원 형식적이에요. 한번 만든 기구는 다시 폐지가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맞습니다.

○이명수 위원 어느 단체장이고 새로 들어가서 있는 기관을 폐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연구원 설립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는데 남용에 대한 대책, 정말 여기도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일몰제로 해야 될 것인지,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구 실적이 아니라 연구 활용 실적, 실제 어떻게 실용적으로 그게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별도의 어떤 보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그것을 단체장이 알고 이렇게 하도록……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진흥원 이것은 통제를 비용으로 통제하나요? 단체장이 무작위로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뭐로 통제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일몰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단체의 설립·운영하면 사람을 뽑아 놓고 다 이렇게 해왔는데 3년·5년 이렇게 해서 일몰을 시킬 수 있는지는 저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되고 단체장이 이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내고 또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하고 또 선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급 기관……

○이명수 위원 뭔가 일정한 중앙의 입장에서 좋은 의미의 감독 기능이 있어야 돼요.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 기관에서 기관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기간 존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폐지하기 어렵다, 계속 확장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좋은 의미의 규제, 이것은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도 조직과 인력을 관리할 때 별도의 출자·출연 법인을 만들거나 또 이렇게 연구소 같은 것 연구기관을 만들거나 했을 때는 기존의 정규 조직상에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지, 만약에 중복되거나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을 만드는 대신에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 조직과 인력을 줄여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같이 검토는 합니다.

○이명수 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여기도 늘고 여기도 늘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잘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명수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 말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전반적인 말씀하시는……

○이명수 위원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기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좋은 의미의 감독을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인구가 얼마, 면적이 얼마 이런 기준을 뒤서 거기에는 어떤 기관의 몇 개 이런 정도 기준을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소위 때 이 논의를 했는데 50만 기준은, 그때 차관님 100만에서 50만 할 때 기준이 별도로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없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기준 보고 검토의견에 보니까 연구원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이 많네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도 만들고, 여기에 줄 그어 놓은 것만 보더라도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 지방분권 활성화 차원, 지방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 연구원 만드니까 전부 다 좋은 점만 있어요, 그렇지요? 좋은 점이 많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좋은 점을 굳이 50만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문제가 된다면 중복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동일 생활권 내 다수의 지방 연구원이 설립될 우려, 정책 연계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차관님, 그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될 성싶고 의미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그것 판단해서 만들겠습니까? 자연히 안 만들지요. 이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검토의견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50만은 되고 49만은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기준도 이전에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다가 어찌해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50만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50만 이하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면 행안부가 검토를 해서 허가해 주는 방법을 터놓는 것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 만들면서 시군구에 대한 특례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고 그 미만이라도 이러한 특정한 프로젝트나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필요하다, 특례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연구원이, 열악하더라도 인근 서너 개 시군이 우리 연구원 설립을 하자 그리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원 설립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자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인구 기준을 못 박지 말고.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50만 이렇게 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꼭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시군구 특례가 자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는 특례로, 법에는 50만으로 되어 있지만 50만 미만이라도 특례로 인정해 달라라고 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지자체 간에 협업을 통해서 몇 개 지자체가 같이 연구기관을 만든다든가 어떤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주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저는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에 따라, 인구수에 따라 이것을 두고 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장려할 문제지 마치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현황 관련된 것인데요.

특례 관련돼서 장관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1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또 도시가 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특례는 지금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충분한 준비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계속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구체적인 특례 시군구에 대해서는 행안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률안 만들 때 어쨌든 각 지역에 행정 수요가 몰려 있는 곳, 대표적으로 최근에 신도청이 지정된 목포나 아니면 홍성이나 경북 같은데 북부지역 안동·예천이나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5쪽입니다.

경영공시 사항 및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 규정 마련 사항입니다.

공시 규정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지방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32조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 및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져와서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입니다.

경영정보 등의 공시 규정을 지방연구원법에 마련하되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연구원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문을 일부 정리하고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공개 시기와 주기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연구원법에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달리 성과계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출자출연법 32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지방연구원법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가 아닌 경영평가를 규정하면서 조문 번호 역시 지방출자출연법과 다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의 시기·주기 등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공개를 위해서는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공개의 시기 및 주기 등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위 논의 경과와 검토의견에 따

라서 수석실에서 수정의견을 작성해서 6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지금은 전혀 연구 결과나 이런 것을 공시한 적이 없는가요,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광역 같은 곳의 연구소는 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 실적과 경영 성과 등을 공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처럼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공시하자는 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하고 연구기관은 좀 달라서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 이런 수정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우선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사람하고 돈에 관한 것만 공시하게 돼 있는데 소위 연구원의 주요 간부진에 관한 인적 사항 같은 것은 일반 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럼요, 다 공개됩니다.

○**이명수 위원** 제일 중요한 콘텐츠에 대한 공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거둬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에 많은 연구원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얼마나 피드백으로 해서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느냐, 주요한 것. 자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7호에다가 연구보고서 및 연구과제 등 연구 실적 및 연구 결과의 행정 반영 실적 이렇게 그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반영 실적을 측정하기가……

○**이명수 위원**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연구원하고 자치단체하고 출연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자기 홍보도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되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도 저희가……

○**이명수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연구원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또 이게 자체 연구 실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수탁 연구 실적이냐 그것도 좀 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넣는 것, 그것은 공시하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공시 지침에 저희가 만들어 넣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부분은.

○**이명수 위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정의견에 연구 성과, 연구 결과의 반영 및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자체 연구인지 수탁 연구인지 그런 것들을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다 됐으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732)

(11시35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위원 임명·위촉 현황을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중복 임명·위촉 자체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현황을 장관에게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비공개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으므로 통보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행안부와 의논해서 수정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주신 것 수용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한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의결하시는 게 어떨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시지요, 수정안을 보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수정안 보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정대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중복 여부를 확인·점검해서 보다 다양한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수 위원** 한번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차관님, 우선 수정대안이 바람직한데 그 단서 이 경우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뭘 확인·점검한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중복 여부를 확인·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인재DB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떤 특정……

○**이명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앞에 중복해서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 굳이 법에까지 넣어야 되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그 부분을 대체를 해서 다양한 DB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겁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중복해서 임명·위촉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미 됐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왜냐하면 기관의 장이

중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노력을 했다, 중복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이명수 위원 그거를 자세히 넣는 것을 반대는 않는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이 뭐예요, 19조의3 내용이 뭔데요? 그리고 거기에 없는 정보는 확인 안 해요? 그것만 확인할 거예요? 그것 아닌 다른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전과자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정보, 중복만 보냐, 중복만을 위해서 19조의3을 넣어야 되느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신원 조회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하는 거고요.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려면 굳이 제19조의3이라는 이것만 여기에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중복을 배제하고 다양하게 넓게 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뜻을……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중복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데 왜 하필이면 19조의3이라는 것만 딱 거기에다 명시해서 점검하겠다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교수……

○이명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굳이 단서를 안 넣어도 그것은 알아서 거기에서 위원을 위촉·임명하면 되는 거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다만 이 기준을 맞춘 위원들이 모수가 여러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인재DB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들이 자세히 나오니까 가능하면 중복된 분들을 쓰지 않는다.

○이명수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면 넣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굳이 이것만 이렇게 딱 명시해 넣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사전 협의하고 위원 현황 통보하는 것은 수용 안 하는 거지요, 사전 협의에 관한 것?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것은 좀……

○이명수 위원 또 하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이게 법정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수시로 만들어지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법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수 위원 그것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수시로 법적 근거 없이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만든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런 위원회는 저희가 가급적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마라. 자문단, 협의회, 컨설팅단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마치 법률에 있는 위원회와 동일한 격으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 실무 작업……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딱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수시로 만드는 위원회나 이런 데도 사실은 같은 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런 것은 저희 지침으로 하고요. 그것은 사실상 실무 작업반에 지원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잠깐 같이 협업하고 또 해체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명수 위원 위원회 자체가 너무 많고 중복되고 한다는, 위원 수가 아니라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명수 위원 이것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법안을 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한 분이 어떤 특정 이런 곳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많은 곳에 되면 다른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인재를 만들어 내야 될 입장에서 다양한 장관님들이나 누구나 위원회를 만들 때는 인사혁신처에 이분이 중복돼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된 분들을 임명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인재를 풀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9)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7)

(11시40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원 선거국장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부터는 오늘 처음 상정하는 안건들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 또한 거소투표 대상자의 주민투표권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이 투표인명부 작성 등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공직선거법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차관님, 이것 지금 보니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고민되고 있

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주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법에는 코로나 격리자를 거소투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지난번 4월에 국회의원선거 때는 확진자 같은 경우는 거소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이 됐는데 지금 격리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먼저 개정하고 관련해서 준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은 위원님,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주민투표법은 지역에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건데……

○이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용을 떠나서 투표를 어디까지 권한을 줄 거냐는 똑같잖아요,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확진자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고려를 했었고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되니까 그리고 병원 시설을 전부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격리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또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계속 되는 선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도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 약이나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라고 봐도 또 한편으로 되게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상위법에 대한 참고 주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그것이 톱다운 식으로 해 가지고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나와서……

○소위원장 박재호 선관위 의견,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만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그 기간 이후에 확진이 되거나 신고를 안 했으면 현실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환자가 치료 상태잖

야요. 그러면 보통 환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투표하겠다고 신고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보통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하십시오라고 알람도 오고 절차가 오지 신고하라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민주적인 투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든 기회를 부여하는 거면 사실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환자한테 본인이 신고를 해서 투표권을 얻으십시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질병관리청이랑 연계를 해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경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거소투표할 수 있다고 알람이 나가는 게 맞고요, 이 취지를 살리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현재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확진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아니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선거일 당일 날 외출 허가를 득해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아까 말씀 중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가 투표하겠다고 뭔가 등록이나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거는 투표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또 우편투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이영 위원 그랬을 때 대리투표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현재 지금 대리투표는 그거에 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투표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격리된 수가 적을 때는 투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겠지만 격리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이견 나중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본인 인증 절차를 해서 ‘내가 보냈다, 보내신 게 맞냐?’ 이런 식의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현재

가능한 방법은 이분들이 기관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시다면 저희가 현장의 참관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응급실 병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병원에서 관리하던 증상 수준도 이제는 다 자가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맞습니다.

○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수가 갑자기 늘었고 당분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거가 대개 상반기에 몰려 있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고 100%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그냥 다 믿고 그럴 것이라고 진행했다라는 것은 지금 자가격리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고민의 이슈로 가져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 우편으로 가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인당 1만 1000원 들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등기 우편 요금이 들어갑니다.

○이영 위원 예, 우편 요금이 9665원이고 봉투 제작이 1335원이고. 그런데 이 비용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야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국가 선거는 국비로 제공됩니다.

○이영 위원 주민투표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가 비용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자체 같은 경우 내부 논의를 좀 같이 해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 나눈 것은 없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

아요. 그러니까 격리자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실효성 있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편리성도 제공이 돼야 되고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인지도 봐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영 위원 그다음에 투명성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다 점검을 해 보신 다음에 현실적으로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이 정도는 준비했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사실은 선거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이 된다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주민투표 우편투표와 관련해서는 한번 관계 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거를 다 논의하신 다음에 검토한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고요.

행안부 차원에서는 그 주법에다가 해당 안을,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감염병 내지는 기타 관련돼서 장기화됐을 때 투표권을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지침을 만든다는 면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선관위에서 누가 와 계시지요, 국장님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 있는 분에게 거소투표를 주시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몇 분 정도 대상이 되는지 추정치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김형동 위원 그런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선거사무를 하시려고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곧 파악을 해서……

○김형동 위원 곧 파악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격리돼 있는 지도 모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그런 내용은 저희가 통보받을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준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리해 가지고,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보건 당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상입니다.

빨리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나오세요.

○소위원장 박재호 자꾸만 들어가지 말고 서 있으세요. 질의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그 말씀은 다 같은데 저는 코로나보다 지금 현재 거소투표에 관련돼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여쭙보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 거소투표 보면 기존에 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지요? 요양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인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김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요양원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했을 때만 선관위에서 잠깐 나가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기관 시설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서 ‘우리는 나오지 마세요’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신청에 의해……

○김민철 위원 지금은 선관위에서 편의상 그 기관에서 ‘우리는 기관에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하면 기표소를 가지고 가서 투표를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김민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관인도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참관인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누가 있습니까? 정당에서 나갑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병원 관계자들이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병원 관계자들이 참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그리고 정당에서도 신청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위원 아니지요. 정당에 신청을 하면 ‘수당 없으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요, 선관위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다 누워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대리투표로 병원 관계자들이 해서 그냥 찍어 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하도록은 돼 있지요, 당연히 대리투표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본인이 직접 기표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한번 이걸 파악해 보셔야 돼요. 거소투표, 요양원에 계신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데 그 기관에서 신청을 안 한 곳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거소투표에 대한 걸 선관위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관님,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소투표의 방법이나 절차나 대상이나 그리고 그걸 그 기관에서 신청하는 데만 가서 하고 신청하지 않는 곳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

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행안부가 같이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주민투표권 행사거든요. 물론 투표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선 모법에서 많은 걸 좀 바꿔야지 더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법안이 올라와서 그 모법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놓는 게 좋은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이거 마치고, 주민투표법 한번 일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안 거기까지만 오늘 오후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는 좀 빨리 끝나면 4시에서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도 고프고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이것으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자료 5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설명회·토론회의 개최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안이고요.

개정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토론회를 개최할 때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설명회·토론회 등의 진행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인 주민투표관리규칙에서 설명회·토론회 등의 진행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나 명시적 위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자료 7쪽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안이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인정 기준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선거권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권의 행사가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있어 본질적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참정권 중 하나인 주민투표권의 연령 기준을 선거권의 연령 기준과 통일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0쪽입니다.

주민투표 실시요건 의무화입니다.

적법한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9조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투표가 단체장의 재량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2쪽입니다.

선상투표 제외 명확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의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들은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된 사항들과 거소·선상투표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선상투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실제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지금 선상투표를 제외한다는 거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다른 것은 공직선거법에 다 맞춰가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행안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은 선출에 관련된 투표가 아니라……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인 줄 아는데 선상투표까지 갈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왜냐하면 그 지자체 내의 사람들인데 선상에 있는 분들이라는 게 지자체 내의 주민이어야 되는데 선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형석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선상에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럴 수 있는데……

○이형석 위원 섬이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물론 그런데 지자체가 단위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선상에 계신 분들 중 몇 분이나 그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그것도 없고……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공직선거법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제외시킨다는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재도 그렇고요.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형석 위원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하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옳은데……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글썽, 관리비용 측면에서……

○이형석 위원 관리비용?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4쪽에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예외사항 명확화합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예외사항에 있어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주민투표 대상 예외사항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투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주

민투표 대상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임의로 주민투표 대상을 최소한으로만 규정하거나 부당하게 축소하여 주민의 투표청구권을 제약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함이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 대상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주민투표 실시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 대상 예외사항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주민투표 예외 대상으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 예산을 수반하는 일체의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실제 재정부담 또는 예산과 무관한 정책을 찾기 어려워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 문언을 정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정부담·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 수립과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안의 편성·의결·집행 사항을 구분하고 전자에 한하여 주민투표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안을 유지해 줘라?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8쪽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실시 사항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책사업이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 주민여론을 수렴·전달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투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국가정책의 참고자료로서 국가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입법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정책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직접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 권한 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취지 및 개정안의 입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그냥 참조사항일 뿐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들은 원하는데 의회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니까 주민들은 원하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느냐 이 말씀이지 않아요, 국가정책인 경우.

○김형동 위원 주민들은 물리적이나 역사적·지리적, 경제생활권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양 자치단체를 통합하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막힐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치·분합을 결정하는 거

고요. 그건 기속당하는 결정이 아니라 폐치·분합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국가정책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조문인데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권한에 관한, 쟁점에 관한 부분을 주민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에 기속당하는 그런 결정인데 국가정책조차도 여기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 얘기인데 의원님들이 발의로 확대해 놓으셔서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는 대상이 아니다. 아닌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김형동 위원 물론 국방이나 나라 정책에 대한 걸 지역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폐치·분합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물론 당연히 기속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보통은 청원·청수도 그랬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계속 물어서 거기가 절대다수가 나왔을 때 입법안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단순한 참조라고만 행안부가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은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의 총의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주민투표라고 하는 건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을……

○김형동 위원 제가 질문을 단순하게 하겠습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폐치·분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하면 사실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 지금 자치단체 폐치·분합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사례도 좀 있었지요, 마창진도 있었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중앙기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었나요?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

해 달라.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치단체 폐치·분합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중요사항하고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행안부가 너무 그냥 국가 중요사항으로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투표를 인정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여기 지방자치법상에 폐치·분합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폐치·분합에 관해서는 자치법에 분명히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은 듣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은 게 원칙적으로 명시돼 있고요.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다만 거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의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과 상치하거나 다르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형석 위원 상치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국가 중요정책과 폐치·분합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여서……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가의 정책은 위에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걸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석 위원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네.

○김형동 위원 예를 좀 잘못 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22쪽입니다.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청구 절차에 종이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외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주민투표 청구는 청구인 대표자 및 수입자가 제시하는 종이 서명부에 자필로 개인정보와 성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방식은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잦은 오기가 발생하며 서명 유효성 심사를 위해 종이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을 전산으로 입력·검증하는 등 서명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청구에 있어 종이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외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서명 과정에서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서명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투표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사가 오타와 같이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무효화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27쪽입니다.

주민투표 발의·청구일 등 제한 폐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 발의 및 서명 요청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실시와 관계없이 주민투표 발의 및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민투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주민투표법에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공직선거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취지로 오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지금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악용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형석 위원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주 첨예하게 쟁점이 돼서 지역이 완전히 분열되고……

○이형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선거 결과에 자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임기 내내 쟁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서 현행 유지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30페이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는 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주민투표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그 기능을 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33쪽, 주민투표일 법정화 사항입니다.

정부안과 위성곤 의원안 두 가지인데요.

현행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주민투표일이 예측 가능하도록 법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은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는 안이고, 위성곤 의원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에 맞추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주민투표일 결정 방식은 주민투표일의 요일이 투표율 등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일 결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투표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일을 법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을 정함에 있어 법정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인 때 등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예에 따라서 주민투표일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을 법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투표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안은 주민투표일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에 맞추려는 것으로 주민투표가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오히려 주민투표 실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일 법정화는 주민투표의 안정화를 위해서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위성곤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저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수요일로 정하면 주민투표율이 제고되거나……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조금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 상황에 맞게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날짜로 정하기 오히려 쉽지 않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투표는 지역 내의 쟁점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리 투표일을 예정해 놓고 양

쪽에서 치열한 논쟁과 과정을 거쳐서 예측 가능한 날을 두고 투표를 해야 공정성이 확보……

○**김형동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일에서 30일 사이에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봐서 길일을 잡든지 좋은 날 하면 되지, 수요일 날 해 놓으면 수요일에 대한 대안이 하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투표일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 투표일 자체가……

○**김형동 위원** 지금도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일이 휴가 시즌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 참여가 적게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까지……

○**김형동 위원**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 참여,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거예요.

‘수요일로 하되’ 이렇게 한다면지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지만 수요일로 딱 못 박았을 때는 오히려 제안설명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에 가기까지의 사안은 지역 내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적인 상황이 되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날짜조차 또 달리 정한다 하면……

○**김형동 위원** 대통령선거도 그날이 만약에 휴일이라 그러면 나는 휴식을 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만들어 가지고 독려해도 그렇게 크게 제고가 안 되는데, 글썄요 이게 수요일……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의 의견, 투표율을 올리려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대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의견 충돌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규정대로 가 버리면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이 의도하는 날짜를 잡아서 유리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픽스해 가지고 공정하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더 낫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김민철 위원** 그게 나아요, 안 그러면 그걸로 논란이 많아지니까요.

○**김형동 위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 말씀은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민철 위원** 천재지변?

○**이형석 위원** 보완을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가 일상화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 제도 안에서 운영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상정해서 예외 규정을 두면 또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형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김민철 위원** 천재지변 정도.

○**이형석 위원** 천재지변이나 그런 보충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법에 두지 말고 조금 고쳐서 시행령에 그런 것을 예외로 두면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형석 위원** 천재지변이나 특별재난 그런 등등의 경우 예를 들어서.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37쪽입니다.

주민투표실시구역 범위 제한 폐지 사항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실시구역 단위를 그 지자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만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투표 실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구역 제한 없이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가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주민투표 실시구역 단위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규모 읍면동 단위가 아닌 동일 생활구역 내 일부 통·리·반 단위의 주민투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 단위 설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구역 단위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하한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투표 실시구역의 최소 단위를 제시하는 등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철 위원 하나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지금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구역, 시군구나 읍면동을 없애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라.

예를 들면 어느 동에 관련된 그 지역 사안인데 단체장이 무엇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쪽의 반대가 심하니 그 옆쪽 동까지 넓혀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게 더 효과적인가요? 그런 방법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민철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러면 최소 단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김민철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여기에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누가 정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자체장이 정하는 건데요.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자

율적으로 정하는데 지자체장이 정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자체장이 정할 때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핵심 쟁점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민투표의 최소 단위를 통·리·반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동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분이 된다 그러면 통·리·반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 제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것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걸로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게 한정돼 있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를 보고 구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투표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철 위원 여기에 말이 앞뒤가 조금 바뀌었는데, ‘동의를 얻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행정구역 주민투표 실시구역 단위를 정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먼저 얻어 놓고 구역을 정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 여기를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구역을 정하는 거지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저는 그 구역을 정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해 놓으면 좀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아시는 분 있으면 실무자가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차관님 아니라도.

○김민철 위원 이것은 주민투표 하겠다고 동의만 얻어 놓고 나머지 그 구역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선거구를 정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민철 위원 투표구역을 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 구역을 지자체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형석 위원** 지금 정부안이 의회 동의로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행정구역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 대상 구역으로 확정한다.

○**김민철 위원**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동의를 못 얻으면 단체장이 낸 주민투표 관할구역이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요.

○**김민철 위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감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개정안에는 주민투표가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구역 제한 없이 주민투표구역 단위를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투표하는 것을 의회 동의를 얻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행정구역 제한 없이 이 부분은 지자체장이 그냥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해석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김민철 위원**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앞서 머리에 보세요, 주민투표가 특정한 지역. 앞에 주어를 보시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개정안 16조에 보시면……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다만 전체가 아닌 특정한 지역, 특정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대상 구역을 선정한다, 그것을 저희가 명료하게……

○**김민철 위원** 개정안 전에는 시군구, 읍면동 투표실시구역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맞는 건데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다 풀어놓는 상태잖아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비슷하기는 한데 좀……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행정구역 제한 없이 실시구역을 정할 때 의회의 동

의를 얻어서 정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그 해석으로 가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가 그렇게 답은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39쪽입니다.

전자주민투표 도입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개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의 기표방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주민투표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투표 운영의 어려움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격리자의 경우 주민투표권 보장의 공백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주민투표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자주민투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차관님, 공직선거법에는 전자투표를 법적 근거로는 채택하고 있지 않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매번 나오는 문제가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신뢰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는 길인데요.

주법이나 상위법은 안 하고 있는데 하위법은 해야 되느냐라고 아까 질의드렸던 것이랑은 다른 맥락이고요. 사실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국소적인 투표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인식이 되면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선행하고 나면 실제로 공직선거법제에 들어가는 선거들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는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관리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는 광역단위로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초단위로 되면 그것은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명료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이영 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이영 위원** 전자투표를 주민투표에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의 성격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무관한 결과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현재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시범 실시보다는 전면적으로 선거제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아니, 여기서 진행을 해 가지고 그간 걱정되던 부분이 어느 정도 불식이 되면 실제 공직선거법에 있는 전자투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공직선거법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선거 도입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서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자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동의를 못 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러 우려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확실하게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의견을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게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저희는 지금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 특히 전자선거에서 우려되는 대리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는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가

능하다는 얘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주민투표법 말씀하십니까?

○**이영 위원** 아니, 주민투표법을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정치권의 합의가 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위원님, 그리고 말씀할 기회가 된다면 주민투표법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투표일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병행하게 되면 중복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투표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규정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것도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투표용지 할 때 신원 확인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전자투표를 하게 돼도 사실 투표 여부가 있어서 중복투표가 되려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게 초 단위로 하는지 분 단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해야 중복투표가 되고 시스템 상으로는 걸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선거일 날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투표법은 선거 날에 전자선거도 할 수 있고 선거일 날 투표소에 나와서 종이투표도 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다 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영 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종이 투표하러 가면 신원 인증받아서 이렇게 찍고 하잖아요, 다 읽고. 그런데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건 쉽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통합명부를 활용하면 가능하긴 할 텐데 거기에서 시스템 확인하는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상 완벽하게 이중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초단위를 못 거른다든가 분단위에서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그 안에 실시되는 중복투표를

못 잡아내는 건데, 잡아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현재 저희 상태에서는 이걸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영 위원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무작위로 이중투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타임 인터벌 안에 사실 체크하는 기간 동안 하면 못 잡잖아요. 그 우려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보는 게 뭐냐면 지금 18조의2 제1항을 보니까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법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심의회 의결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표준화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사실 중복투표가 문제인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게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이중투표나 위조투표나 이런 것 다 잡잖아요. 걸러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임의의 전자시스템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 사실은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뭐, 뭐, 뭐에 준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를 쓸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제가 10년 치를 봤더니 전체 12건밖에 실시가 안 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한 그 범위 내에서의 얘기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투표를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선관위와 협의해 가지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이 법이 진행돼서 그냥 전자투표를 하자, 그런데 안에 있는 걸 읽어보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스

템을 구축해도 되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또 투표 독려하거나 이럴 때 문자 메시지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단문, 장문, 본인인증 이렇게 따지면 인당 102.3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게 보내는 횟수랑 인구수에 따라 갖고 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게 빈도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팬츠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전자투표를 도입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약간 시범사업이든 모의테스트든 그런 것에 대한 근거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6항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사항 외에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의 기준, 표준화 또 기술적인 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칙들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선관위, 해당 선관위 그 기준을 맞춰 가면서 할 겁니다.

○이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가능해요? 왜냐면 마치 뭐를 다 뒤로 미룬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실시하자 이것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것 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실은 굉장히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룬 것 같아 보여서, 여기 보면 다른 시스템을 쓸 수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그 다른 시스템이라는 게 선거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지자체장이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돼서,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든 쓸 수 있는데 다만 그 시스템을 쓸 경우 선관위로부터 인증을 획득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안정성 말씀하시는……

○이영 위원 예, 이러든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선거를 치르고도 되게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을 주려면 자율성으로 다 선택을 하되 실제 시행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10년 동안 12회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도수가 적다면 차라리 선택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시스템도 쓸 수 있다는 조항을 빼 버리고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보팅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케이보팅 시스템.

○이영 위원 예,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현재 케이보팅 저희가 주민투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 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서 지자체의 선거하는 방식을 다 개입하기가 뭐하면 알아서 하는데 다만 시행 전에 선관위로부터 검증 절차를 거칠 것 이게 들어가야 되고, 10년에 12회 정도로 거의 빈도수가 없다면 자율권을 굳이 줄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케이보팅, 뭐, 뭐, 뭐 중에 하나로 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투표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가 됐든 그 부분은 정해서 보충해야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18조의2 정부안을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그렇게 나오고 각 호에 해당하는,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그 밖에 기기 및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지금 사이버테러가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킹이나 랜섬웨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투표 방법은 자치단체장에게 선거관리 책임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게 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로 주민투표를 하려면 규정을 보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칫하면 이것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두 위원님의 말씀에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국장님이 아니라 차관님, 그 말에 인정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차관님, 법을 하나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관계부처인 선관위하고 이야기를 잘 하시고 선관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선관위원회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행안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일원화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수정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이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잘 돼 가지고 전자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편리성만이 아니라 안정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걸로 입증이 돼서 사실 점차적인 전자투표 시행의 초석을 닦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투표 빈도가 적든 뭐가 됐든 어떤 로컬을 딱 타깃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것을 두 부처가 고민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 전자주민투표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추후에 좀 더 검토를 정밀하게 해서……

○소위원장 박재호 법안 다 마무리하셔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할 때 같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 위원님 말씀따라 선관위 국장님,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전자정부뿐만 아니고 투표까지 신뢰성 있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신뢰성 있는 투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자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은 수정 좀 하시고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46쪽입니다.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 및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현재 20일이 넘는 주민투표운동 기간을 주민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13일로 축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와 관련해서 장기간 투표운동을 통한 지역주민 간 갈등 심화 및 투표운동 비용 증가 문제 등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와 주민투표 대상과 사유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투표운동 기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참정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문언에 따르면 투표운동 기간이 14일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의 달성을 위해서는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 개정안은 통·리·반장이 읍면동의 행정보조자로 행정시책 홍보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에 있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통·리·반장 외에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분권법에서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운동 금지를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에 관해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문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반장에 대한 주민투표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통·리·반장까지 두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어떠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는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서로 기능과 역할,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통·리·반장까지만 금지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에 대해서는 저는 축소를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인 선거운동하고 맞춰서는 안 된다.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도 되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시에 이런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까지 갈 때 좀 더 체계적……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갖출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축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리·반장 주민투표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국장님, 지금 현재 통·리·반장이라도 사퇴를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며칠 전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9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투표에서는 들어가기 직전에 사퇴하면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걸 알고 풀어 놓으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차관님,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하는 거지요? 그 전에까지 하더라도 직전에만 사퇴를 하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회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자치회법이 통과가 되면 통장들하고 이런 기능이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왕 손볼 거면 나중에 또 개정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다 구성·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 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근거 법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상태에서 통·리·반장과 동일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것 포함을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없는 데는 없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있는 데는 원래 주민자치회 빼고 중립의 의무를 그때 소위 때 논의를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넣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이게 뒤에 각주 20하고 21 다 읽어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원들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합성을 따진다면 위원들도 통·리·반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투표운동 금지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이 통·리·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하고 주민투표와 같은 주민 참정권 확대, 적극적인 참여 이쪽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까지 금지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을……

○**김형동 위원**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특별법의 29조, 뒤에 각주 21에 있어요. 2항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주민투표라는 게 정치행위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한 내용을 보면, 통·리·반장에 대해서 금지하는 제한 내용을 보면 특별법 29조의 취지에 비취가지고 해석했을 때 당연히 위원들도 포함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현장자치, 주민들 위주의 자치와 선거의 중립, 정치적 중립 이걸 너무 과하게 하면……

○**김형동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용어 안에, 그 의미 안에 주민투표운동 금지도 들어가는지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또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투표운동 금지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쟁점에 대한 의견 표시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자치활동을 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통·리·반장 여기는 행정조직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행정조직으로 봐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자치 시범기구로서의 그런 위원회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과 대치돼서 움직이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에 귀속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미래 예측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더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그리고 차관님 말씀대로 나중에는 자치회로 다 이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형동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검토의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리·반장을 금하는 취지가 각주 19 달려 있는 데 보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위원들이 관계를 더 많이 맺어요,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맞잖아요.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통·리·반장은 일정한 수준의 보수, 후생복지적 차원의 급여 비슷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조례로 정하는 통·리·반장에 대한 혜택들이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저기여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해 보고요.

○**김형동 위원** 우리가 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고민 좀 더 하시고 어쨌든 이 법안은 오늘 논의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고치시고 또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내일 아침에 할 거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50쪽입니다.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완화 사항입니다.

정부안과 위성곤 의원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정부안은 주민투표 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고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데 정부안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주민투표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고 정부안과 위성곤 의원안은 개표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확정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확정요건의 기준이 실제 주민의 사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를 경우에도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6분의 1의 득표로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주민투표권자의 8분의 1의 득표로 결과가 확정될 수 있는 개정안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확정요건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

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개표요건 폐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법과 같이 개표요건을 두는 것은 투표 참여가 곧바로 주민투표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개표요건 미충족을 통한 투표 무효화를 위해 투표 불참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표 불참 운동을 예방하고 주민투표권자들의 의사 확인을 통한 주민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표요건 폐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 확정요건을 4분의 1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요.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안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확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우리보고 논의해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8분의 1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느냐, 과거 6분의 1도 부족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주민투표가 참정 활동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빠르게 결정해서 지역에 나와 있는 혼란, 쟁점들을 줄여 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너무 요건을 엄격하게 해 놓으니까 아까 이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12건 정도뿐이 안 돼 있었고 심지어는 이것 개표요건도 안 돼 있어서 2건은 열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8분의 1이나 6분의 1이나의 의미를 그렇게 숫자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이게 과거에 서울시장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주민투표에 지속력이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가 적

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잠깐 논의했던 지방자치단체 통폐합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직접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반을 묻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찬반만 묻는다고 그랬을 때 8분의 1이 동의하면 동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또 다른 요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8분의 1은 너무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위원님 폐치·분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이 우선적이고 주민투표 의견을 보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쟁점들,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표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치가 더 높은 것 아닌가. 이거를 8분의 1, 6분의 1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져 저희가 확정요건과 개표요건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그리고 개표요건을 폐지하게 되면 어떨습니까? 부작용이 투표하지 말자는 게 일종의 반대운동으로 여겨지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를 반대하는 활동을 너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김형동 위원** 개표하는 게 사실상 확정요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무의미해지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개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쟁점에 대해서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49 대 51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은 다수결이니까……

○**김형동 위원** 분명히 이것은 최초의 입법자가 개표요건하고 확정요건을…… 이렇게 개표요건이 됐을 때만 열어 보자라고 했던 그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취지가 운영을 해 보니까 부작용이 아주 심했던지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렇게 물어두는 것이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고요 현상을 확인해 보는 것도 대안일 수 있고 또 결과에 따라 현상을 변경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는데 그것의 가치들이 거의 대등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문어두면 갈등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표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것을 행안부가 정한 게 아니고 지방의 의견도 들었고요. 자치학회, 법학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형동 위원** 학자들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김민철 위원** 모든 주민투표에 대해서 개표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어찌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다고 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치·분합 때는 이걸로 결정하는 게 의견수렴 정도로, 주민투표로 그 반향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의 하나일 뿐이지 그걸로 최종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마지막으로 54쪽, 주민투표일 연기 규정 보완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투표 연기 사유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외에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면서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염병 발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의 실시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표를 연기하여 주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천재지변 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김형동 위원** 아까 그거 수요일 그제 이거네요.

○**이형석 위원** 앞에 나왔던 부분을 보완해서……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내일 다시 상정하여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관님은 이거 수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수정을 해서 또 조금 그거 하신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서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이것은 바로 올려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잠시 한 20분 정회하고, 저도 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김형동 위원 4시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4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한 10분만 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8293)

1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8316)

1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0237)

1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3587)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서 경찰청을 대표하여 진교훈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연합회 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형석 의원안은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은주 의원안은 기관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영훈 의원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서범수 의원안은 기관 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은 기관 단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하나의 기관에서는 하나의 협의회만 둘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연합회 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는 직장협의회 설립 단위인 기관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무 환경의 결정권을 가지는 단위를 고려하여 연합회 등의 설립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 정부 측에서는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이라든가 협의회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노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경찰 쪽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 등이 있어서 경찰의 의견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경찰청에서 나온 분.

○경찰청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입니다.

저희도 1년 정도 직협을 운영해 보면서 경찰서 단위 또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직협에 참석하고 있는 직협 대표들도 그런 한계 때문에 논의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입장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행안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차관님,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 직장협의회도 있고 또 노조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저는 향후에는, 미래에는 이런 직장협의회도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간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대신 지금 현재의 직장협의회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일반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이게 권한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단위의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인사나 예산권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경찰의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연합회의 필요성을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경찰과 지자체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기에 좀 어렵고요. 직장협의회는……

○이형석 위원 대비해서 보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동의하시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인사권에 대한 전결권이 있지만 다른 기관, 지자체가 아닌 다른 기관들은 경찰 기관과 대동소이합니다. 자체적인 예산이나 인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통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직장협의회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근본적으로 목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법에는 노조는 근로조건……

○이형석 위원 차관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협의회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조차도 결정할 수 없는 단위, 이런 경우 연합회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하도록 직장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대화 상대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상급기관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연합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논의하라고 직장협의회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근무환경, 고충처리 이런 소프트한 내용에 대한 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연합회 정도는 인정해 주고 대신 우리 행안부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제한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우선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다만 이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서로 이렇게 맞닿으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법이……

○이형석 위원 자꾸 노조법을 거기다 붙이지 마시라니까요. 이건 직장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직장협의회 연합체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법안이잖아요. 여기서 자꾸 노동조합을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 같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데 99년도에 이 직장협의회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전국 단위 연합체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형석 위원 만들어져서 운용을 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창룡 청장 같은 경우에도 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행안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면서 연합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쁜 것 같고 봐요.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논의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 위원 사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어서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직장협의회와 노사협의회와 노조와 명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다가 처음에 법안을 읽을 때는 느껴졌는데요. 뒷부분으로 가니까 단체와 기관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고 또 분쟁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이것은 물론 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그래서 공무원 직협의 성격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서로 출발하기 전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읽었을 때는 공무원 노조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를 것 같고, 순수한 의미에서 노사 간의 자유로운 어떤 소통의 시스템 하나를 정착을 해서 직원들의 의향이 상부 조직까지 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면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한 공무원 조직이 있고 또 특수한 상황상 경찰청 같이 이런 게 좀 힘든 곳도 있고, 그러면 이 취지를 살려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어딘가를 정해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다른 법안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노사협의회가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법안을 내신 쪽도 있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들도 좀 의사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유로운 소통의 창구를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가능하게 법으로 그 권리를 지켜준다 외에 구체적인 것들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제목만 바뀌지 이게 노조랑 차이가 있는지 노사협의랑 차이가 있는지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안 들으시니까…… 제 우려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재호 예, 들었습니다.

○이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다 노조하고 똑같아지더라 거기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다음 항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9쪽,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 확대 사항입니다.

개정안 중에 이은주 의원안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6급 이하라는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 외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고요.

오영훈 의원안은 협의회 가입 제한 대상을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여 가입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직급으로 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지휘·감독, 예산·인사 업무 종사 공무원 외에는 모두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오영훈 의원안은 협의회 가입 제한 대상을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 협의회 가입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협의회 가입 제한 직급을 삭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의 직급 제한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업무의 성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공무원노조법도 개정이 돼서 가입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면 그것보다 좀 연성인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는 넓혀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13쪽, 협의회 협의사항 확대입니다.

개정안 중 이은주 의원안은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기관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형석·오영훈·서범수 의원안은 연합회의 설

립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협의회·연합회’ 또는 ‘협의회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이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추가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6쪽입니다.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근무시간 중에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활동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왼쪽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 법률 7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 18쪽, 합의사항 이행의무 부과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관장에게 기관장과 협의회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협의를 요구하면 기관장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모두 기관장에게 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은주 의원안은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에게 합의사항 이행 노력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보할 유인이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행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직장협의회의 목적·취지에 맞게 직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는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위원님들.

○김형동 위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일 것 같은데요, 아까 초반에 연합회 설치 관련해서 차관계서는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직장협의회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과 활동 범위가 기본적으로 기관 단위 내에서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 기관 단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을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연합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러면 아까 이영 위원님 말씀 따라 노조와 차별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김형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행의무가 주어질 것 같으면 그것은 노동조합 하면 되는 거고요. 노동조합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행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회 설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수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또 다른 의견…… 김민철 위원.

○김민철 위원 경찰청 차장님, 지금 현재 전국에 4급 이상 기관이 몇 개 기관 정도 됩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경찰의 경우에는 300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거기에 협의회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나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중의 91%인 273개 기관에 협의회가 만들어져 운영 중입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경찰청 입장은 좀 어떠세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상급기관으로 건의사항 형태로 자꾸 올라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직협의 대표들이나 참여 구성원들도 이렇게 되면 경찰서 단위에서의 논의나 이런 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든 현재도 광역 단위에 있는 직협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한 명씩 뽑아서, 소통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본청에서 경찰청장과 간담회 형태로 한번씩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연합체 설립에 관한 논의는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이렇게 설립되는 데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연합회의 필요성은 있다 그 의견이고.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행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좀 있으세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이행의무는 행안부 의견과 당연히 같습니다.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를 들면 논의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들도 책임을 가지고 협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어떠세요? 직장 협의회 설립에 대한 입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연합회 관련해서는 다른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노조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연합회의 필요성이 적은 거고요. 경찰의 경우에는 노조의 길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회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경찰

쪽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 행안부가 굳이 이것을 꼭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의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대 의견들은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죽 나오겠지만 그 부분도 뭐랄까, 직협하고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해 줬으면 더 좋겠고요.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20쪽의 분쟁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것으로 보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하므로 개정안의 위원회는 그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22페이지에 수록한 유사 입법례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직장협의회를 통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약해서 더군다나 그걸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연합회를 먼저 설립하고 이런 분쟁위는 구체적인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 보다 제가 똑같은 말을…… 다시 좀 협의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일단은 직협 쪽에서도 만들어서 내부의 협의를 해서 그런 안들이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입장도 일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마지막으로 24쪽의 연합회 설립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연합회 설립에 따라 협의회를 ‘협의회·연합회’ 또는 ‘협의회등’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연합회 설립 관련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의견이 정리가 되면 연합회로 할지 협의회로 할지 용어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오늘 위원님들 다른 의견……

○김민철 위원 이걸 복잡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설립에 공감할 하면 여기서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연합협의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뭐 협의회 등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다들 의견을 들었을 거고 또 직협 쪽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서 많은 의견을 내셨고, 여야 의원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쨌든 1단계로 협의체는 만들어서 이름은, 용어는 어떻게 하든 청장님에게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는 일단 여야가 다 동의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혹시 이제 직협하고도 의논이 되면, 물론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청과 행안부가 만일 거기까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내일 아침에 이 안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를 좀 하셔서 내일 아침에 올려서 위원님들 다 오셨을 때 한번 통과해 보는 걸로, 오늘은 정족수도 안 되지만 오늘 의논한 걸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직협법 일반법이잖아요. 오늘 하다 보니까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것으로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게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러면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전체 공무원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행안부가 계속 그리 했던……

그런데 일단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내일 다시 상정을 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안부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고 미의결 안전에 대해서는 내일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진교훈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규 전보된 김일권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민철	김형동	박재호	백혜련
이명수	이영	이형석	최춘식

○청가 위원(1인)

이해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경찰청차장	진교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선거국장	김재원
------	-----